

Social Contract'. Through discovering this veil of secularization, this article tries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the Christian Constitutionalism 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Constitution, Constitutionalism, Protestantism, Christian Constitutionalism, Korean Politics, Korean Christianity, Covenant Theology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는 성경적인가?

이재울(계명대 교수)

논문초록

한국의 지가상승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헨리 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는 지대의 100%를 조세로 수취하는 토지가치세를 빈곤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 조지스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얼른 보면, 토지가치세와 토지균분 및 회년제도로 대변되는 성경의 토지제도는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양자는 모두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고찰하면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성경이 토지에 대한 기계적인 평등권 자체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경제적 평등과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성경은 토지공유제가 아니라 평등한 토지 사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토지가치세가 현대사회에서는 실제 고용기회와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며 토지에 대한 평등권도 또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그대로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수정되어야 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상대적인 경제적 평등과 고용기회의 창출,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토지가치세, 토지사유제, 회년, 빈곤, 복지국가

I. 서론
II. 구약성경의 토지제도: 토지균분과 희년제도
III. 성경의 토지제도와 조지의 토지가치세
IV. 토지가치세와 빈곤 해소
V. 요약 및 결론

I. 서론

19세기말 헨리 조지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목격하고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의 발견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그는 빈곤의 해결책으로 토지 가치세¹⁾를 제시하였고, 이 방안은 성경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성경의 토지제도와 조지의 사상은 매우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후에 그의 사상에 동의한 조지스트들(Verinder, 2000; Andelson, 2001; Shapiro, 2001; 이 풍, 1998; 대천덕, 1998, 2003)도 토지가치세가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 주장은 그 후에 별다른 숙고 없이 그대로 인정되어 왔다(전강수·한동근, 2000).

조지는 일련의 연설에서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Thou Shalt Not Steal]는 강연에서는 토지사유제는 도적질을 허용하는 제도, 즉 십계명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Thy Kingdom Come]에서는 토지가치세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세 Moses]라는 연설에서 모세는 토지독점을 불가능하도록 만든 진정한 해방자라

1) 헨리 조지는 진보 가운데 빈곤이 만연하는 원인이 진보의 과실을 지대라는 형태로 소수의 지주들이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의 해결책으로 지대 전부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는 없애는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다.

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그는 그의 저서 곳곳에서 자신의 주장이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지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경쟁이 치열하여 임금을 기아선으로 밀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부가 풍성한 이 시대에 인류문명의 중심지에는 다른 시대의 야만인보다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창조주가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부정의 때문에 생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리를 우리 법제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 우리가 법제화하려는 것은 황금률의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그 최상의 대책으로 빈곤을 추방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정당한 권리를 갖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류 공동의 유산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헨리 조지, 2003: 14-15)

조지는 토지가치세의 성경적 근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서 찾았다. 즉 자신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일종의 자연권으로 신봉하였다.²⁾ 그래서 조지는 자신의 토지 가치세는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종교 지도자인 브래들리(Preston Bradley)는 조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2) “개인적 토지소유권의 인정은 다른 개인들의 자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George(1992: 341)



“조지는 현대의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이며 가장 고상한 통찰인 성서적 도덕에 기초한 개혁적 자본주의체제를 체계화하였다. 우리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도덕과 종교의 원리를 경제체제에 붙여넣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다. 이것이 지난날의 가장 현명한 자들과 가장 훌륭한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책임인데,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가 바로 헨리 조지이다.”(Bradley, 1980: 209-210)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지위를 헨리 조지에게 부여하였고, 그의 도덕은 성서적이라고 단정하였다. 앤델슨(Andelson, 2001: 196)은 토지 가치세는 ‘땅은 주님의 것’이라는 영적 진리의 확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한 대천덕 신부도 조지의 저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는 『진보와 빈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전 세계의 위대한 고전 중 한 권이며 성경의 향기를 풍길 뿐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대천덕, 2003: 139)

대천덕 신부 역시 토지 가치세는 성경의 토지정의를 오늘날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아서 조지의 사상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얼른 보기에 토지가치세가 성경의 정신과 부합하게 보이지만, 과연 성경의 토지제도가 그 핵심에 있어서 조지의 토지 가치세와 일치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균분과 희년제도로 구성된 구약의 토지제도는 토지에 대한 평등권 부여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맞다면 토지 가치세와 상당히 일치한다. 그렇지만 당시의 토지분배 과정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의 기존 토지 소유권은 배제된 채 이스라엘 민족만의 토지균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이 과연 토지에 대한 철저한 평등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약의 토지제도는 토지평등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가

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토지제도와 함께 이삭 남기기, 이자금지, 십일조를 통한 구제 등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조지는 빈곤의 원인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지대의 증가가 노동자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대를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토지는 공유물이므로 만인이 이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권리를 일종의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없애는 토지 가치세를 도입하면 자연적 정의는 회복되고 빈곤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경의 토지제도가 토지가치세와 그 근본에서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양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성경의 토지제도의 진정한 의도와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지의 주장도 현대사회에 부합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아래 II절에서는 토지균분과 희년제도로 요약되는 구약성경의 토지제도를 고찰하고, III절에서는 성경의 토지제도와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일치하는가를 논구한다. 그리고 IV절에서는 토지가치세가 본래의 목적인 빈곤 해소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V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구약성경의 토지제도: 토지균분과 희년제도

성경의 토지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1)가나안 정복시의 토지분배로서 토지면적과 질을 고려하여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토지균분이라고 한다. 2)토지의 영구매매를 금지하고 토지사용권만 최장 50년간 거래토록 하여 희년에는 토지가 원래의 가족에게 회복되도록 하였다.

이것을 희년제도라고 한다.

1. 가나안에서의 토지균분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나이반도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분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민수기 33: 51-55)³⁾

가나안의 토지는 가족 수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상당히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지시되었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토착 가나안인은 살육되거나, 추방되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인으로 생존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소유권은 거의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사실이다.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정복민족만의 토지분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것은 부분적인 토지평등권의 시행이었다. 민수기의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하는 민족에게 땅을 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⁴⁾ 오직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만 상당한 정도로 토지평등

3) 성경의 인용은 모두 표준 새번역 개정판을 이용하였음.
4) 신학자 김희권에 의하면, “야웨가 땅의 원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야웨는 땅 거주민들을 얼마든지 교체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땅에 사는 거주민들의 도덕적, 정치적 수준이 함량미달일 때, 즉 땅을 더럽힐 수준일 때는 야웨는

권이 실현되었다. 물론 토지의 양적 및 질적 측정의 어려움과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한 균등분배는 불가능하였다.

2. 희년제도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레위기 25: 23)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레위기 25: 10)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매매는 허용되었으나 시한부였다. 즉 최장 50년 동안 토지를 매각할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면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을 희년제도라고 하였다.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본인이나 친척이 그것을 무를 수 있게 하였고(레위기 25: 25-28), 무르지 않으면 그 땅은 희년에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갔다. 희년제도와 무르기 제도에서 제외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매각 후 1년이 지나면, 무를 수 없고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매각되었다.

여기서 희년이 적용되는 토지는 농업용 토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그들을 땅으로부터 추방시킬 수 있었다(신 9).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런 야웨의 땅 소유권 행사과정에서 축출된 것이다(창15:13-14).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추방되어 이산과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야웨의 땅 소유권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수: 23-24).”, 김희권(2004: 138-139).



지역은 희년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업용 토지는 당시에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이었고, 토지를 상실할 경우에는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 혹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 토지분할 시에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되었지만, 흉년이나 질병 등의 불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 그런 사람은 부득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토지를 판 본인은 토지 대금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털 수 있으나 그 후에는 토지가 없는 채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야 했다. 만일 토지가 영구적으로 팔린다면 토지를 판 본인 뿐 아니라 그 자손들도 토지가 없는 채로 소작농이나 노동자로 살게 된다. 희년의 목적은 이러한 무 토지 상태, 즉 가난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원래의 비교적 평등한 토지분배 상태를 시간이 흘러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⁵⁾

당시 토지가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이었으므로, 세월이 흘러도 토지분배 상태를 평등하게 유지하는 이 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지혜로운 제도이었다.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경제적 평등과 자유⁶⁾, 그리고 가난의 해소를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희년제도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토지가격이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것은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나 사는 사람에게나 공정한 것이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은 하락한다. 보통 희년이 토지 매입자의 희생이나 자선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이렇게 희년을 제도화 해 놓고 난 후 어떤 이유로 희년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입자가 최장 50년 후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고서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토지의 횡령에 해당한다. 희년제도는 어느 시점에든 시작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희년제도가 시작될 때의 토지분배 상태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희년을 선포

하고 토지를 평등하게 재분배하자고 하는 것은 희년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권의 거래만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후에 토지를 희년이 시작될 때의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희년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희년제도는 토지의 강제적 재분배가 아니라, 토지 거래자들이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토지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토지의 주기적 재분배와 같은 결과를 정치적 강제력의 사용 없이도 이룩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토지의 영구적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토지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한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가 평등하게 분배된 직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권의 거래만 허용하면 토지는 시간이 흘러도 비교적 평등한 분배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이 농지개혁을 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사용권의 거래만 허용했다면 그 당시의 상대적으로 평등한 농지분배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희년제도는 얼마 동안 시행되다가 결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예컨대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 땅을 영구 매입하였고(열왕기 16장),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열왕기 17장). 왕들은 넓은 토지를 확보하여 왕족과 가신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희년제도가 시행되지 않게 된 것은 주로 권력에 의해서이고, 때로는 토지 매각자와 매입자의 합의에 의한 영구매매도 있었던 것 같다.

5) 희년은 “가난과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제도다”, 김희권(2004: 144)

6) 농경시대에 토지소유는 신분상의 자유, 토지사용의 자유 등 많은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어 토지소유가 주는 자유의 중요성은 매우 약화되었다.

III. 성경의 토지제도와 조지의 토지가치세

1. 성경은 절대적 토지평등권을 의미하는가?

조지는 성경의 토지제도를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라고 해석하고, 자신의 토지가치세가 성경적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성에 관해 지껄이면서 말로써 혹은 간접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 날마다 세상에 태어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들에게 제공할 땅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더 낫고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나라이 임하옵시며], 헨리 조지, 2003: 58-59)

조지는 같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면, 모든 사람, 창조주의 모든 자녀는 그분의 하사품에 대해 동등한 사용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법률들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땅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사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나라이 임하옵시며], 헨리 조지, 2003: 57)

조지는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 공평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전제에서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추론해 낸다. 이 하나 하나의 진술은 모두 성경적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이고, 공평하고 사랑인 존재이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악한 민족들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악할 경우에 가나안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기도 하는 존재이며, 기계적 평등을 넘어선 존재이다.

이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는 매우 평등한 토지분배가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다. 당시 토지 이외의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의 평등분배는 부의 평등을 의미하고 소득분배도 상당한 정도로 평등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또한 빈부격차와 가난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구약성경은 토지의 평등분배와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빈곤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랐다고 생각된다. 성경의 정신이 토지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력과 자본축적, 운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에는 무관심하다고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이삭 남기기, 이자금지, 십일조 등 빈곤해소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진보와 빈곤』에서 조지는 성경의 직접적 계시보다는 자연적 이성의 추론을 따라서 토지에 대한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논의는 성경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으며 조지의 주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노동과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헨리 조지, 1997: 320).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도 생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노동에 근거하는 소유권은 다른 종류의 소유권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사람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 또는 타인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생산자가 생산으로 인해 배타적 보유와 향유의 권리를 갖는다면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의 배타적 보유와 향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옳지 않다.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그 기회와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면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창출한 부의 일부를 비생산자가 지대로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노동의 결과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는 그만큼 부정된다.”(헨리 조지, 1997: 322-323)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헨리 조지, 1997: 324)

누구에 의해서도 생산되지 않은 자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조지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직관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조지의 주장은 자연권론자인 로크(John Locke)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⁷⁾. 로크도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지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안락을 위해서 공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조지와 유사하다. 그런데 공유물의 의미에 대해서 로크와 조지는 다른 해석을 한다. 로크가 말하는 공유란 바다처럼 누구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유이다. 반면에 조지는 토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로크는 자연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도 충분하고 동일하게 좋은 공유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사물이 손상되기 전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소비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두 번째 단서는 내구성이 큰 화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도 사유화한 사람의 토지개량으로 토지를 사실상 넓힌 셈이 되므로 불평등한 토지소유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로크는 이 모든 과정은 정부가 없었던 자연 상태에서 가능했고, 정부가 통치하는 때에는, “법률이 재산권을 규율하고, 토지소유권은 실정헌법에 의해 결정된다.”(Locke, 1963: 344)고 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토지의 공유권으로부터 출발했으나 결국에는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시 정치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불평등한 토지소유권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로크는 지나친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은 일단 태어나면 자기 보존권, 즉 생존권을 가진다고 하였다(Locke, 1963: 327).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토지소유제도를 결정할 권한이 정치사회에 위임되어 있다. 로크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설령 조지의 견해를 수용하더라도, 토지가치세가 토지평등권을 보장하는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토지평등권을 보장하려면 징수된 지대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 조세 대신 다른 조세가 폐지되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약간의 세금 감면을 받을 뿐이고, 고임금근로자 및 전문직, 경영자, 대자본가들은 많은 세금을 감면받는다. 그러므로 토지평등권을 보장하려면, 징수된 토지 가치세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조세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가 권력에 의해서 취득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토지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것, 즉 토지개혁이나 토지 가치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오랫동안 자유롭게 거래되고 사유되어 온 현실에서 갑자기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조치는 많은 갈등과 불공정 시비를 초래한다. 어떤 사람은 가진 토지를 팔아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자녀교육에 투자하기도 하여 매우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

7) 로크의 재산권론에 대해서는 이재윤(1995) 참조.

들에게 다시 토지평등권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 공평한 처사인가? 토지를 매각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도 토지평등권을 확보해 줄 것인가?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토지평등권은 기계적인 토지평등권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의 권익을 신장하는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와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⁸⁾ 토지는 여타 자원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즉 천부적 자원, 공급 제한으로 인한 지가의 가파른 상승, 공공투자로 인한 지가상승, 빈번한 투기와 거품 등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대의 100%를 조세로 환수하는 조치는 사실상의 무상 국유화이므로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온 현실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율, 2001).

2. 성경은 토지공유제를 지지하는가?

조지는 토지균분은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것” (조지, 2003: 66)이라고 하면서 토지 가치세를 제시하였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토지의 균등 분할은 불가능하고, 지대를 모두 징수하는 것이 토지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그런데 성경의 토지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토지사유제이고 토지 가치세는 토지공유제이다. 조지는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유를 인정하고 토지의 사유를 부인한다” (헨리 조지, 1997, 324)고 주장하였고, 버린더 (Frederic Verinder)는 “히브리 토지법의 바탕을 이루는 일반 원칙들은 토지

의 사유라는 발상이 조금도 살아 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Verinder, 2000: 43)고 하면서 성경이 토지의 사유를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지와 조지스트들은 성경이 토지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토지의 균분과 회년제도는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을 가문에 주었고, 다만 처분권에 있어서 영구 매각권은 허용하지 않고 한시적인 사용권의 매매만을 허용하였다. 토지는 각 가문의 자손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할 생산수단이었으므로 한 세대가 영구히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토지관련 권리가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 제도는 당연히 토지사유제인 것이다. 혹자는 성경이 지대의 공유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토지가 가족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용도의 변화나 질의 변화에 따른 토지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반면에 조지의 토지 가치세는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개인에게 허용하나 수익권을 국가가 가지므로 사실상 토지의 국유화나 마찬가지이다. 수익권이 없는 사용권과 처분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권리이다.

토지의 사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토지가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가계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반면에 토지가 공유이면 토지는 가계의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의 이상은 비교적 평등한 자작농들의 공동체였다. 자작농들은 토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토지의 질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토지의 활용과 처분, 그리고 노동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 농민이었다. 토지를 사실상 국유화하는 조치인 토지 가치세보다는 토지 사유제를 유지하면서 토지소유를 보다 평등하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토지 보유세를 보다 강화하고 누진화하는 것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8) 토지관련 조세가 단순히 지방세원의 하나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재원으로 쓰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토지가치세가 생존권과 노동기회를 보장하는가?

헨리 조지는 [정의는 목적이고 과세는 수단이다라는 연설에서,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생존권과 노동기회 보장의 기본전제라고 주장하였다. 조지가 토지문제에 눈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가 빈곤 및 실업이었으므로 그의 처방이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적절한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자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세상에 나올 때 자연적 유산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생산의 기초인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없이는 생존할 권리, 일할 권리, 노동의 과실을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일세라는 이름은 적어도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가치에 대한 하나의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정의는 목적이고 과세는 수단이다], 헨리 조지, 2003: 76-77)

토지가 유일한 생산수단이었던 농경시대에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토지의 평등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와 생존권을 부여하고, 노동과실을 향유케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토지의 균분과 희년제도는 매우 지혜로운 제도였다. 헨리 조지가 생존하던 시절에 미국은 산업화 초기 국면을 맞고 있었고, 농업의 비중이 아직도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토지의 평등 분배는 생존권 보장이거나 일할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중요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에 도달한 나라에 있어서 토지의 평등권이 과연 생존권과 일할 기회, 노동 과실의 향유를 보장하는가?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지를 모든 사람에게 균분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생존권과 일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토지만이 생산수단이었던 시대는 지나

고 이제는 자본이 아주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었다. 토지에 노동을 투하하는 생산방법은 너무나 생산성이 낮아서 채택되지 않는다. 토지 이외에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이 투하될 때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이 달성될 수 있다.

토지의 균분과 달리 조지가 말한 토지 가치세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토지소유자들은 지대를 모두 조세로 납부한다. 대지주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겠지만, 농민들도 생산물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이며, 이들은 지대세 납부와 동시에 지가가 영이 되므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대신 다른 조세가 사라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토지를 적게 가지고 주로 주식과 채권을 많이 보유한 자본가, 대기업 경영자 및 고위 임직원, 고임금 근로자, 전문직 등이다. 이들은 그 동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많이 납부했는데 이것이 모두 사라져서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에 저임금근로자나 실업자, 빈민들은 감면 받는 세금이 거의 없어서 아주 작은 혜택만 볼 것이다. 지가가 영이 된다고 해도 토지를 사용하면 지대세를 내야하고 건물, 기계 등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민, 영세민, 저임금 근로자들이 창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⁹⁾ 토지평등권을 어떤 형태로 보장해 주던 간에 그것만으로 노동기회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물질 자본과 인간자본, 그리고 신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더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하고, 빈곤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득 및 부의 재분배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토지가치세만 실시되면 다른 모든 방법이 필요 없이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조지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토지가치세의 빈곤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 절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9) 지대의 크기와 비중이 작아서 감세효과가 적다.

IV. 토지가치세와 빈곤 해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지의 균분과 희년제도의 근본목적은 토지평등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평등과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조지의 토지가치세도 빈곤의 해소가 근본목적이라고 그 자신이 주장하였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토지를 가진 자작농은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에 비해서 형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노동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지역적으로 독과점시장이 되어서 지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독점적 착취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자작농체제는 빈곤의 해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고 본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러한 토지제도 이외에도 이자금지, 추수 때 이삭 남기기, 십일조를 통한 구제 등에 의해서 빈곤을 해결하려는 매우 강한 의도가 보인다. 구약의 토지제도가 주는 교훈은 각 가족이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스스로 일할 기회를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당시에는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의 균분상태의 유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토지균분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헨리 조지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의 제시에 있었으므로, 토지가치세가 의의를 지니려면 빈곤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 가치세는 빈곤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¹¹⁾

우선 토지가치세가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대의 절대적 크기와 그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한다. 만일 그 크기와 비중이 미미하다면 그것을 모두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할들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10)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만 해도 소작농과 지주는 생산량을 3: 7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1) 토지가치세의 빈곤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이재율(2005) 참조.

도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8년의 미국의 지가총액/GDP의 비율이 0.6이었는데¹²⁾ 이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면, 2001년 미국의 GDP는 약 10조 달러이므로 미국의 지가총액은 약 6조 달러이다. 추정지대는 6조 달러 x (이자율 - 평균지대증가율)¹³⁾, 이렇게 계산하면 약 1,800억 달러, GDP의 1.8%에 불과하다.¹⁴⁾ 이것은 매우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지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해준다.

한국의 경우 김윤상(2002)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의 지대총액의 상한은 46조 3000억 원인데, 현재에도 지대총액은 약 50조 원-6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2005년 GDP 약 800조의 6-7%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균등분배하면, 약 100만원 -120만 원 정도가 분배될 수 있다.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헨리 조지는 엄청나게 많은 지대가 지주들에게 집중 분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빈곤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평등권의 원리에 따라 지대를 균등분배해도 그것은 가계소득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조지의 주장은 토지 가치세를 균등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정수입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50조 원-60조 원의 토지 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 예컨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삭감한다면, 소득과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이익을 볼 것이고, 원래 그것이 적었던 저임금근로자나 빈민층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

조지가 예상한 것보다 지대는 훨씬 적고, 게다가 그 적은 금액을 균등하

12) 이정우(2002) 참조. 그 이후의 자료가 없어서 1988년의 비율을 그대로 사용함.

13) 이자율은 프라임 레이트 기준으로 4%, 지대상승률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1%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이재율(2005) 참조.

14) 미국의 지대는 매우 관대하게 계산해서 GDP의 5% 정도이고, 현실적인 수치는 2.5% 정도라는 추정이 있다.

www.talkaboutinvestments.com/group/sci.econ/messages/205008.html 이 수치도 조지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게 분배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조세를 삭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부분은 미미하다. 조지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의 철폐로 인해서 투자와 근로 등의 생산 활동의 활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50조 원의 토지 가치세는 2005년 예산 기준 총재정규모 228조 원에 비하면¹⁵⁾, 22%에 불과하다. 세율을 22% 인하한다고 해서(조세부담을 27.1%→21.14%로 인하) 그것의 투자 및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저임금노동자에게 트리클-다운(trickle-down)되는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조지가 예상한 것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효과밖에 나올 수 없다.

조지에 의해 빈곤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토지가치세의 빈곤해결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이다. 조지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지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생각하여 잘못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빈곤의 해소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투자, 고용증대 및 재분배정책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토지 가치세는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므로, 엄청난 이해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지가를 영으로 만들어서 소비와 투자의 대폭적 감소,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예컨대, 농민)은 극빈층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자본가 계층과 고소득 전문직 및 고임금 계층이다. 빈곤층에게는 거의 이득이 없다.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전면 부정하여서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만을 고집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는 토지 가치세 제도를 계속 붙들고 있는 태도가 과연 빈민을 돕고 빈곤을 해결하는 태도인가? 그리고 다른 조세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며 재분배정책을 거부하는 태도가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 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치게 나아간 나라들의 경험이다. 우리

의 경제력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재분배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법이라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성경의 토지제도와 조지가 말한 토지 가치세 사이에는 토지의 공정한 분배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상이한 점이 많다. 첫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매우 평등한 토지 분배 상태를 이상으로 제시하였지만, 성경의 토지평등 이상은 그것을 넘어서 일할 기회, 소득, 부 등 전반적인 경제적 평등과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지가 주장하는 기계적인 토지평등권을 상황이 매우 다르게 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사상이라고 수궁하기는 어렵다. 둘째, 성경의 토지제도는 공유제가 아니고 사유제이다. 토지재산권이 한 가족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비교적 평등한 자작농의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매각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토지 사유제를 바탕으로 하고, 보다 평등한 토지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성경의 토지제도는 농경사회에서 일할 기회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 혹은 지식사회에서 토지균분이나 토지 가치세는 일할 기회와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토지가치세의 빈곤해결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

기독교인이 헨리 조지를 선지자라고 보고 그의 주장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인 데에는 양자 사이의 유사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경의 토지제도는 단순한 기계적인 토지의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실업과 빈곤의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는데, 조지는 토지의 기계적인 평등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조지의 이론이 고전학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

15)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고 있어서 지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고, 토지가치세의 빈곤해결능력을 과신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토지가치세가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을 해결하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토지 이외의 다른 대상에 대한 조세, 즉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부정의라고 보는 조지주의의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과 유사한데, 이 견해는 성경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시편 24: 1). 인간 존재와 인간이 받은 재능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이것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는 사회의 공동적 필요와 재분배를 위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성경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은 공유물인 토지는 평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소득과 부는 무제한적으로 수취하고 축적하게 하지는 지오리버럴적(Geo-liberalism)인 길이 아니라,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와 소득에 있어서 비교적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며 빈곤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 경제능력에 맞는 점진적인 복지국가에로의 길일 것이다.¹⁶⁾ 그 가운데 토지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 토지분배가 극히 불평등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다른 자산에 비해 보다 높은 세율로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빈민들의 최저생계비와 주거 안정, 교육기회의 확대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지세를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토지를 별로 갖지 않은 고소득층을 매우 유리하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16) 당장 북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점진적인 복지확대가 바람직하다. 빈곤을 해소하는 것은 범죄의 감소, 사회통합 등을 통해서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으므로 복지확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곤란하다.

그리고 토지가치세의 장기적인 성장효과, 고용효과 가운데 저소득층과 빈민에게 트리클-다운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윤상(2002), 『토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 김희권(2004), “규약성서의 희년사상과 사회윤리적 함의”, 『신학사상』 127집, 2004 겨울, 131-165.
- 대천덕(1998),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CUP.
- 대천덕(전강수, 홍종락 역: 2003), 『토지와 경제정의』, 서울: 홍성사.
- 이재율(1995), 『경제윤리』, 민음사.
- 이재율(2001),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국제경제연구』, 7(2), 245-265.
- 이재율(2005), “헨리 조지의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제연구』, 제14권 113-133.
- 이정우(2002),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이정우 외,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4-214.
- 이 풍(1998), 『모두가 살맛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서울: 진리와자유.
- 전강수·한동근(2000), 『토지를 중심으로 본 성경적 경제학』, CUP.
- 헨리 조지(김윤상, 전강수 역: 2003), 『헨리 조지의 세계관』, 서울: 진리와자유.
- Andelson, Robert V.(2001), "The Earth is Lord's", *The Path to Justic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nry Georg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5-201.
- Bradley Preston(1980), "Henry George, Biblical Morality and Economic Ethic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39, no.3, July, 209-215.
- George, Henry(1992), *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 Locke, John(1963),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The New English Library, Ltd, 존 로크(임성희 역: 1981), 『통치론』, 세계의 대서상 6권, 서울: 휘문출판사.

Shapiro, Aharon H.(2001), "Moses? Henry George's Inspiration- Religious Foundations of Social Polic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Dec, in *The Path to Justic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nry Georg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13-222.

Verinder, Frederick, *My Neighbor's Landmark*, 이 풍 역(2000), 『하나님의 토지 법』, 서울: CUP.

- 논문접수 : 2006년 10월 30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12월 8일
- 게재승인 : 2006년 12월 16일

Abstract

Henry George's Land Value Taxation and the Biblical Land System

Jae Yool Lee(Keimyung University)

Now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Henry George owing to the rapid land price hike in Korea. He analyzed the cause of poverty in the midst of progress and suggested land value taxation(100% taxation on land rent) as a recipe about 100 years ago. Also he maintained land value taxation is nearly equal to the principle of the Bible in terms of the equal right to land. At a glance land value taxation is very similar to the Biblical land system(equal division of land and jubilee).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irst, the Bible means relative economic 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as well as relatively equal right to land. Second, the Biblical land system is based on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rather than communal ownership. Third, land value taxation cannot resolve poverty and unemployment satisfactorily. Therefore we should not accept land value taxation as a biblically correct answer. Rather as christians we should search for ways to realize relative economic equality, more employments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in the modern society.

Key Words: land value taxation, private ownership of land, jubilee, poverty, welfare state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집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한글논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4. 모든 논문에는 논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논문 초록은 논문 제목 밑에 500자 내외로,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각각의 경우, 5단어 내외의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타이틀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2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장평 5%, 자간 -10%
 - (6)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節, 項, 目 순으로 배열한다.
 節은 ‘I, II, III, ...’ 의 순으로, 項은 ‘1, 2, 3, ...’ 의 순으로, 目은 ‘(1), (2), (3), ...’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